

「2026년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모집공고 [이음 3차]」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망 교란으로 대전광역시 내 물류 창고 및 운수업의 경영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전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버팀이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이번 3차는 금년도 마지막 모집이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I

사업개요

- ☐ 사업명 :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버팀이음) 프로젝트
-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 ☐ 지원대상 : **2026년 2월 28일~9월 30일 채용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이음! (3차)	●신규 채용자	(이전직장) 대전 물류·운수·창고업 ▶ (현 직장) 대전 전 산업으로 이전직한 자	총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50만원씩)
	●신규 채용자	(이전직장) 전체 지역 전 산업 ▶ (현 직장)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으로 이전직한자	총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50만원씩)
	기업	①, ②지원 대상자를 2026년 2월 28일 ~ 9월 30일 신규채용한 기업(2월 28일 포함 신규채용 인정함)	간접노무비 30만원 (3회 분할 지급 10만원씩)

- (대전 근로자)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근로자 지원
- (이·전직 기준) 「지원대상 총괄표」에 따라 이·전직 요건을 검토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최초취업자
 - 고용보험 이력상 이전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생애 첫 취업인 경우
 - 이·전직 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 제외
 - * 동일 사업주 재고용자
 -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재고용으로 보아 지원 제외
- (중복지원 제외) 이음프로젝트 1차 및 2차 지원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동일 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
- (신청대상 근로자) 본 지원금은 '대전 지역화폐(온통대전)'로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대전 지역화폐(온통대전, (구)대전사랑) 카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
 - * 단, 신청 시점에 대전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는 최종 선발 후 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기존에 사용하던 대전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신규 발급하지 않아도 됨

II

이음프로젝트

* 2026년 2월 28일~9월 30일 신규 채용된 이·전직자(2월 28일 포함)

□ 지원대상(고용보험 가입자 한정)

- ① 대전 물류·운수업에서 ▶ 대전 전(全) 산업으로 이·전직한자
- ② 전국 전(全) 산업에서 ▶ 대전 물류·운수업으로 이·전직한자
- ③ ①,②지원 대상자를 2026년 2월 28일~9월 30일 신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참여기업 업종제한

- ❶ 유형의 신규 채용자를 고용한 기업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❷ 유형의 신규 채용자를 고용한 기업은 H(운수창고업)코드 업종 기업으로 참여를 제한함
 - 신청 기업은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H코드 이외의 업종은 신청하더라도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 기업 요건은 반드시 본 공고문 내의 'V.지원제외 기업 및 업종'을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① 대전 물류·운수업에서 ▶ 대전 전(全) 산업으로 이·전직한자
 - 총 100만원의 대전 지역화폐 지급(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② 전국 전(全) 산업에서 ▶ 대전 물류·운수업으로 이·전직한자
 - 총 100만원의 대전 지역화폐 지급(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③ ①,②지원 대상자를 2026년 2월 28일~9월 30일 신규 고용한 기업(산업무관)
 - 신규 채용자 1인당 총 30만원의 간접노무비(현금) 지급(1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가. 이음프로젝트 지원 신청

- (참여기업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 근로자가 확정되면 근로자의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까지 일괄 취합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 개별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기업을 통해 패키지로 접수하여야 함

이음프로젝트 참여 신청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 시점 발급분) ③ 사업장 통장사본 ④ 참여자 신청서(근로자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⑥ 참여자 부정수급 약속서(근로자용)
⑦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신청 시점 발급분) ※반드시 기업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3자의 업무 대행은 불가함 ※제출서류 발급 홈페이지 내 FAQ 참고

- (적격 검토) 수행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7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나.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퇴사자명단 제출) 기업은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내에 퇴사한 경우, 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퇴사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퇴사자가 최소 고용유지기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도래 기간(전 회차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예) 지원금 대상자가 1회차 지원금 수령 후, 15일 경과 시점에 퇴사한 경우 2회차 신청 도래 기간 전 퇴사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불가

Ⅲ

대상자 선발방식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참여자 선발(평가)이 필요한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함

Ⅳ

유의사항

가. 지원금 신청 기한 지연에 따른 지급 불가 안내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전 회차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이 경과해야 차기 회차 신청이 가능함
- (집행 마감 원칙)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 마감 기한(12월 31일)에 따라, 모든 지원금의 최종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20일까지임
- (미지급 귀책사유) 신청 기업 또는 개인의 신청 지연으로 인해 차기 회차의 신청 가능일이 12월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신청 회차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이 불가(부동의)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지원금 신청 기준

- 1회차 신청 : 운영기관이 고지한 날짜부터 신청 가능
- 2회차 신청 : 운영기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
- 3회차 신청 : 2회차 신청일 기준 1주일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

나. 지원금 환수

- 거짓 구직 등록, 위장 고용,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및 부과금 징수
- (지원금 전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함

- (사업 참여 제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참여자는 본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법적 책임) 부당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다. 지역화폐 지급 오류 발생 시 정정 기한 및 부지급 안내

- (지급 방식) 본 사업의 지원금은 지역화폐(정책지원금)로 지급됨
- (신청자 귀책에 따른 오류) 신청자의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 카드 사용제한(정지 등), 카드 정보 오인 기재 등 신청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정 기한(7영업일)) 지급 오류 발생 시 수행기관은 이를 통보하며, 신청자는 부지급 통보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7영업일 이내에 오류 사항을 정정해야 함
- (기한 경과 시 조치 (부지급 및 차순위 배정)) 통보 후 7영업일 이내에 정정되지 않거나 서류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최종 부지급(지급 취소) 처리됨

*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종합 평가점수 순에 따라 차순위(예비) 대상자에게 즉시 배정

□ 지원제외

가. 기업 업종 제한

- 기본적으로 H코드(운수 및 창고업) 기업의 참여만을 인정함 ***별첨 참고**

* 이음프로젝트의 ❶대전 물류·운수 ▶ 대전 전산업 이·전직자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기업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그 외 모든 유형의 참여자 및 기업은 재직중인 기업 또는 개인사업체의 업종이 H코드가 아닌 경우 지원불가

- H코드(운수 및 창고업) 중 세세분류에 따라 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일부 조건부 참여 허용 업종의 경우에는 물류·운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세세분류	항목명	비고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제외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제외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제외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제외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제외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제외
49231	택시 운송업	제외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제외
49233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제외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제외
49420	늘찬 배달업	제외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제외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제외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제외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제외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제외
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제외
50209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제외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제외

세세분류	항목명	비고
52911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조건부 허용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조건부 허용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조건부 허용

조건부 허용 업종

○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52911)

- [조건] 지하철역, 여객 철도 역사 관리 등 승객(여객) 수송 지원 업무는 제외하며, 철도 화물 터미널(기지) 운영, 화물 열차 입환·조업, 또는 철도 화물 운송 관련 장비·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증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또는 철도물류 기업과의 화물 기지 운영·정비 위탁 계약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 증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2)

- [조건] 순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제외하되, 터미널 공간 내에 '수하물 취급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여객 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소위 터미널 택배/퀵 서비스) 및 허브 운영'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증빙] 버스 연계 화물(수하물) 관련 계약서 등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 [조건] 화물차 전용 휴게소(화물차 라운지 등) 운영, 물류 단지(컨테이너 야드, 화물터미널) 진입 도로 및 관련 시설 보수·운영을 전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증빙] 매출 구성 중 일반 통행료 수입 외에 '화물차 편의시설 운영 매출' 등

○ 주차장 운영업 (52915)

- [조건] 일반 승용차 및 여객용 차량 중심의 주차장이 아닌, 화물자동차 전용 차고지 운영, 물류창고 부속 주차 시설 운영, 또는 화물차 중심의 유료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증빙]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 계약' 실적

○ 공항 운영업 (52931)

- [조건] 여객 터미널 관리 및 항공 여객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하며, 공항 내 '항공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 조업', 또는 '항공 화물 계류장 및 물류 창고 시설 관리·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증빙] 공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화물'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 증빙

나. 지원 제외 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 연도에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
- ④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⑥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사 권고 등 고용조정 기업
- ⑦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⑧ 지원금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감원방지 규정

- 감원방지 대상 :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
- 감원방지 기간 :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 위반시 제재 : 지원금 지원대상 기간 중 참여기업에서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 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일할 지급 없음)
 - 인위적 감원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위적 감원 발생 월부터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지원금 지원제외 :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후 다른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됨. 단,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전 채용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가능

다. 지원 제외 근로자

●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혼인 등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

②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가입 가능하며, 또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등

⑤ 대전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VI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각 사업별 접수 기간에 따라 신청

사업구분	신청기간	평가기간	이의신청기간	최종 통보일정
이음! (3차)	2026년 10월 12일(월) ~10월 29일(목)	2026년 10월 30일(금) ~11월 4일(수)	2026년 11월 5일(목) ~11월 6일(금)	2026년 11월 11일(수) 15시 이후

*신청 및 평가기간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공식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대전버팀이음.kr)

※ 회원가입 -> 사업 내용 확인 -> 신청 접수

☐ 선정안내 : 개별통보

☐ 문의처

소속	담당자	이메일	유선전화
기업일자리지원팀	이준영	jyl602@iva.or.kr	042-368-9734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요건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코드	항목명	지원 여부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지원 제외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지원 제외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지원 제외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지원 제외
49231	택시 운송업	지원 제외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지원 제외
49233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지원 제외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지원 제외
49301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지원 가능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지원 가능
49309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지원 가능
49401	택배업	지원 가능
49402	늘찬 배달업	지원 제외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지원 가능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지원 제외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지원 제외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지원 제외
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50209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지원 제외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지원 제외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지원 가능
52101	일반 창고업	지원 가능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지원 가능
52103	농산물 창고업	지원 가능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지원 가능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지원 가능
52911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조건부 지원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조건부 지원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지원 가능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조건부 지원
52915	주차장 운영업	조건부 지원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지원 가능
52922	선박관리업	지원 가능
52929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31	공항 운영업	조건부 지원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지원 가능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지원 가능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지원 가능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지원 가능